

참고 1.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

① 도로, 교량, 옹벽 철거공사

(사)한국건설자원협회 제공 (단위:원/톤)

배출지	품명	적용범위	단위	적용단가
도로, 교량	페콘크리트	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페콘크리트	Ton	24,377
옹벽 철거공사	페아스팔트콘크리트	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페아스팔트콘크리트	Ton	25,939

② 재건축·재개발 공사

(사)한국건설자원협회 제공 (단위:원/톤)

배출지	품명	적용범위	단위	적용단가
재건축·재개발 공사 (주택·아파트 등 철거·해체 공사)	건설폐재류	가연성 폐기물이 제거된 상태에서 페콘크리트, 페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, 폐벽돌, 폐기와,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	Ton	41,951
	건설오니	건설공사, 굴착공사,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류(洗輪)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%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	Ton	52,360
	혼합건설폐기물	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% 이하 혼합된 것	Ton	60,322

③ 기타 혼합건설폐기물

(사)한국건설자원협회 제공 (단위:원/톤)

배출지	품명	적용범위	단위	적용단가
재건축·재개발 공사 (주택·아파트 등 철거·해체 공사)	혼합건설폐기물	불연성폐기물(페유리, 페타일, 폐자기 등)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% 이하 혼합된 경우	Ton	152,401
		그 밖의 건설폐기물(페보드류, 페판넬 등)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% 이하 혼합된 경우	Ton	156,247

- 해설**
- ① 동 처리단가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,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4호(2019.6.1) “예정가격작성기준”,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(2019.10.4) 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”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
 - ② 동 처리단가는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, 경유가, 노임, 원부자재, 수리수선비,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19년 건설공사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
 - ③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, 일반관리비,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(최종처리대상 폐기물)의 처리비·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으며,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
 - ④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×80cm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화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「건설공사 표준품셈 9장 대형브레이커」 소화품 등을 참고하여 별도 계상이 필요함
 - ⑤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(배출현장)에서의 분리·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, 페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
 - ⑥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“페콘크리트” 또는 “건설폐재류” 등으로 설계하여서는 안 되며,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·성상, 지역,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,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(다만, 단가를 예외적용 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)
 - ⑦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폐재의 판매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

· 본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환경부 예규 제659호, 19.8.19) 중 적정처리비(예정가격)산정과 관련하여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건설폐기물 처리단가임[관련규정 : Ⅲ.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및 위·수탁 계약 등 - 1.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- 가. 적정처리비(예정가격) 산정 - 2호]

참고 2. 산업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 소각처리단가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공 (단위:원/톤)

처리시설	폐기물 종류		처리수수료	처리시설	폐기물 종류		처리수수료
소각시설	지정	폐 유 액상	280,000	소각시설	일 반	폐합성수지, 폐합성고무	250,000
		고상	300,000			고분자화합물등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	273,000
		폐유기용제 할로겐족	400,000			폐목재류	250,000
		비할로겐족	300,000			동물성 잔재물	270,000
		폐합성 페합성수지	300,000			식물성 잔재물	270,000
		고분자 화합물 페페인트 및 페락카	400,000			오니류	270,000
		폐유독물(사업장, 실험실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독물)	2,000,000			폐흡착제 및 폐흡수제	300,000
						건설 폐기물 혼한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	300,000

- 해설**
- ① 상기 처리수수료는 부가세 별도임
 - ② 본 처리단가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, 기획재정부(계약예규) “예정가격작성기준” 제464호(2019.12.18), 행정안전부 예규 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” 제114호(2020.6.10)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
 - ③ 동 처리단가는 경유가, 노임, 원부자재, 수리수선비, 소모품료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
 - ④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, 일반관리비,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(최종처리대상 폐기물)의 처리비 및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으며,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
 - ⑤ 2종류 이상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의 처리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를 적용한다
 - ⑥ 소각처리수수료는 반입폐기물의 성상, 종류 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양하므로 반입폐기물의 성상, 처리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처리시설운영자가 고시된 수수료범위 내에서 결정·적용하되, 소각대상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성상이 유사한 지정폐기물 수수료의 90%를 상회할 수 없다
 - ⑦ 변압기, 콘덴서, 드럼통 등 밀폐용기에 들어있는 폐기물로서 처리시설에 투입하기 위하여 절단, 파쇄, 용융 등의 별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가 정하는 처리수수료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
 - ⑧ 기타 위의 수수료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처리시설 운영자가 결정한다
 - ⑨ 처리수수료 및 운반비중 고정비는 심원 단위에서 반출됨하여 백원단위로 하고, 운반비중 변동비는 원단위로 한다
 - ⑩ 처리위탁 받은 폐기물을 처리시설 운영자가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에 정한 수수료에 종류별 운반비를 합산하며, 운반비는 운반차중을 우선하여 적용한다
 - ⑪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낙찰가격을 처리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